

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3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6.(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제6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지적과장 성 인 덕)

부동산중개업법개정(2000.1.28공포, 법률제6236호)에 따라 종전 법제37의3 및 37조의 5에서 규정하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조정의 절차, 조정의 처리방법등 모법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2000. 7.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2000. 1. 28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되어 2000. 7. 29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된 종전법 제37조 3 및 제37조 5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법령인바
- 모법이 삭제되었으므로 그에 부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함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